

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10. 4. 15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윤준용의원 외 5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3. 25.
- 제안자 : 윤준용의원 외 5인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·육성하고자 도림동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·방법란에 “도림동당제(도림동)”을 추가하고, 동 통·폐합으로 통합된 (영등포3동)을 (영등포동)으로, (신길2동)을 (영등포본동)으로 변경(안 제4조제2항의 [별표 1])

■ 관련법규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제1항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해당 없음.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·육성하고자 도립동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2항(진흥사업대상) [별표 1]의 전통 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·방법란에 동 통·폐합과 관련하여 (영등포3동)을 (영등포동)으로 하고, (신길2동)을 (영등포본동)으로 하며, “도립동당제(도립동)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2010년도 부군당제 지원예산은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4. 15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문화예술진흥법

- 제3조 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시책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